
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6.06.30.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일본으로 알코올 음료(주류) 수출 시 유의점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코올 음료의 수입 절차 : 일본

I. 알코올 음료의 수입절차(アルコール飲料の輸入手続き)

質問	アルコール飲料 (ワイン・ビール・ウイスキー・日本酒・焼酎など) の輸入手続き
	알코올 음료(와인, 맥주, 위스키, 일본주, 소주 등)의 수입절차
回答	アルコール飲料を輸入販売する場合、所轄税務署長から 酒類販売業免許 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す。販売目的でアルコール飲料を輸入する場合、 食品衛生法 の規制を受けます。
	알코올 음료를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판매업 면허 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알코올 음료 를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의 규제를 받습니다.

일본 측 수입업자가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판매업 면허(酒類販売業免許)**를 받아야합니다. 일본의 주류 판매는 주세법에 근거한 면허 제도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을 하려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판매장별로 취득**해야 하며, 주류 판매업 면허는 주류 도매업 면허와 주류 소매업 면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여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 주류 도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를 계획한다면 **통신판매 소매 면허도 추가로 요구**됩니다. 외국 기업은 단독으로 수입업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일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유통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식품 수입 신고, 주세 신고, 장부 관리 등 관련 의무도 철저히 준수해야합니다.

II. 일본 수입시의 규제 (輸入時の規制)

1. 주세법(酒税法)

アルコール飲料を輸入販売する場合、販売場ごとにその販売場の所在地の所轄税務署長から酒類販売業免許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す。免許の区分は販売する酒類の範囲や販売方法によって異なります。免許申請手続きについては、最寄りの税務署の担当酒類指導官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작성일자 : 2026.06.30.]

ただし、酒場、料理店その他酒類を専ら自己の営業場で飲用に供する業を行う場合には、販売業免許は必要ありません。この場合でも下記に詳述する **食品衛生法の手続きは必要**です。

알코올 음료를 수입판매하는 경우, 판매장소 별로 그 판매장소의 주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판매 면허를 받아야합니다. 면허의 구분은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나 판매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지역의) 가까운 세무서의 담당 주류 지도관에게 문의하십시오.

단, 주점, 요리점 그 외 주류를 전적으로 자체 영업장에서 음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식품위생법의 절차는 필요**합니다.

2.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a. 절차(手続き)

販売目的で酒類を輸入する場合（自身の経営するレストランで客に提供する場合も含む）、厚生労働省検疫所食品等輸入届出受付窓口に「**食品等輸入届出書**」と**必要書類(原材料、成分または製造工程等に関する説明書、衛生証明書（必要に応じて）、試験成績書（必要に応じて）)**を届け出る必要があります。審査の結果、規格基準や安全性の確認が必要と判断されたものは検査が実施されます。検疫所での審査や検査の結果、同法上問題がなければ、「食品等輸入届出済証」が発行され、それを税関への輸入申告時、通関書類とともに提出します。不適格と判断されたものは輸入できないため、輸入者は積戻しや廃棄等の措置を取ります。

판매목적으로 주류를 (일본으로)수입하는 경우(자신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 후생노동성 검역소 식품 등 수입 신고 접수 창구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와 필요서류(원재료, 성분 또는 제조공정등에 관한 설명서, 위생증명서(필요시), 시험성적서(필요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 결과, 규격기준이나 안전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은 검사가 실시됩니다. 검역소에서 심사나 검사 결과, 동법상 문제가 없다면 「식품 등 수입신고제증」이 발행되며 그것을 세관에 수입신고시,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부적격이라고 판단된 것은 (일본에)수입할 수 없으며, 수입자는 반송이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b. 규격기준(規格基準)

와인 등의 알코올 음료를 (일본에)수입하는 경우, **첨가물이나 잔유농약기준**(농약의 각 식품 안의 잔유량의 한도)에 유의해야합니다. 기준(허용량)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후생성 고시 제370호「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으로 정해져있습니다(**ポジティブリスト制度・ポジティブ リスト 제도**). 또한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는 농약 등의 허용되는 일정량은 **0.01ppm**이하입니다.

비슷한 식품첨가물이나 사용기준이 정해져있는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에도 주의를 요합니다.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되어있는 발색제, 착색료, 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아래와 같은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 i) ブランデー: メタノールの過量検出
- ii) リキュール: メタノールの過量検出、ソルビン酸（保存料）の対象外使用、L-リンゴ酸（指定外酸味料）、指定外着色料であるアズルピン、キノリンイエロー、パテントブルーVの含有など
- iii) ワイン: ソルビン酸の過量使用、二酸化硫黄（酸化防止剤）の過量残存
- iv) ワインクーラー: 安息香酸（保存料）の対象外使用
- v) サングリア: 指定外甘味料であるアセスルファムカリウム、サイクラミン酸ナトリウムの含有、 サッ

カリナトリウムの対象外使用など

- i) 브랜드 : 메탄올 과량검출
- ii) 리큐르 : 메탄올 과량검출, 소르빈산(ソルビン酸)(보존료)의 대상외사용, L-사과산(L-リンゴ酸)(지정 외 산미료), 지정외 착색료인 아졸빈(アゾルビン), 키노린 옐로우(キノリンイエロー), 패턴트블루 V(パテントブルーV) 함유 등
- iii) 와인 : 소르빈산(ソルビン酸) 과량사용, 이산화황(산화방지제)의 과량잔존
- iv) 와인쿨러 : 안식향산(ベンゾ산)(보존료)의 대상외사용
- v) 상그리아 : 지정 외 감미료인 아세설팜(アセスルファムカリウム), 시클람산 나트륨(サイクラミン酸ナトリウム)의 함유, 사카린나트륨(サッカリンナトリウム)의 대상외사용 등

Ⅲ. 판매시의 규제(販売時の規制)

1. 인허가(許可)

II. 1(酒税法・주세법)에 기재되어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나 판매방법에 의해 주류면허가 달라집니다. 면허와 관련된 주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일본)세무서의 담당 주류 지도관에게 문의하십시오.

2. 표시(表示)

주류 보전 및 주류업조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3에 의해 주류를 수입하는 자(주류판매업자)는 보세지역에서 인수할 때까지 수입하는 주류 용기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수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그 인수처의 소재지, 용기의 용량 및 주류의 품목과 주류 품목에 따라 법령이 정한 사항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통관항의 세관 수납 창구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증(酒類販売業免許証)(또는 통지서)의 사본과 함께 아래 항목을 기재한 「표시방법 신고서(表示方法届出書)」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표시 방법 신고서 기재내용 (공동표시사항)

<表示方法届出書記載内容 (共通表示事項)>	
a.輸入者の氏名または名称	i.未成年者の飲酒防止警告表示 (未成年の飲酒は法律で禁じられています等)
b.輸入者の住所	j.容器識別表示 (スチール、アルミ、PET、紙、プラスチックを材料とする容器については識別マークの表示が義務付けられています)
c.引取先の住所 (酒類販売業免許証に記載されている販売場の位置)	k.有機等の表示 (有機農産物加工酒類の場合) (酒類により加える事項)
d.容器の容量 (ℓ、ml、リットル、ミリリットルなど)	l.原材料
e.酒類の種類 (品名、ビール、果実酒など)	m.原産国
f.アルコール分 (度またはパーセント、%)	n.賞味期限又は品質保存期限
g.発泡性 (「発泡性」「炭酸ガス含有」等)	o.保存方法
h.食品添加物 (酸化防止剤、合成保存料等の名称)	

a. 수입자의 성명 또는 명칭 b. 수입자의 주소 c. 인수처의 주소 (주류 판매업 면허증에 기재된 판매장의 위치) d. 용기의 내용(ℓ、ml, リットル, ミリリットル 등) e. 주류의 종류(품명, 맥주, 과일주 등) f. 알코올 함량(또는 퍼센트, %) g. 발포성(「발포성」「이산화탄소 함유」등) h. 식품첨가물(산화방지제, 합성보존료 등의 명칭)	i. 미성년자 음주 방지 경고 표시 (미성년의 음주는 법률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등) j. 용기식별표시(스틸, 알루미늄, 페트, 종이, 플라스틱을 재료로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식별 마크의 표시가 의무화) k. 유기농 등의 표시(유기농산물가공주류의 경우) (주류에 따라 추가 사항) l. 원재료 m. 원산지 n. 유통기한 또는 품질보존기간 o. 보존방법
--	---

주류의 용기·포장이나 주류의 진열장소에는 법령으로 정한 표시 의무 사항이나 표시 기준에 근거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 国税庁：酒類の表示

<https://www.nta.go.jp/taxes/sake/hyoji/mokuji.htm>

또한 과일주 등의 제조방식·품질에 관한 표시의 기준이 정해져있어, 2018년 10월 31일 이후 「일본 와인(日本ワイン)」과 구별하기 위해 수입 와인에는 「수입 와인(輸入ワイン)」이라고 표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원재료에 수입와인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 와인 사용(輸入ワイン使用)」 등, 수입 와인을 사용한 것을 알리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수입한 농축포도과즙을 물에 희석한 것을 원재료로서 (일본)국내에서 제조한 와인((일본)국내제조와인:国内製造ワイン)에, 수입와인을 섞은 새로운 (일본)국내제조와인을 제조한 경우, 일괄표시란의 원재료 표시로는 블랜딩에 사용한 (일본)국내 제조와인의 원재료로서 「농축환원포도과즙(외국산) : 濃縮還元ぶどう果汁 (外国産)」과 「수입 와인(輸入ワイン)」을 표시하게 됩니다. 표시 기준에 규정된 원재료 이외에도, 식품표시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표시가 의무화된 첨가물(산화방지제(아황산염)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IV. 그 외 일본국내관련법(その他の国内関連法)

1. 경품표시법(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공정경쟁규약

(景品表示法(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公正競争規約)

과대한 경품부판매나 소비자가 오해할만한 과대·허위표시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류에 관한 아래의 업계단체가 공정경쟁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a. 日本ワイナリー協会 (景品) b. ビール酒造組合 (景品・表示) c. 日本洋酒輸入協会 (景品・表示) d. 日本洋酒酒造組合 (景品・表示)	e. 日本酒造組合中央会 (景品・表示) f. 日本蒸留酒酒造組合 (景品) g. 全国小売酒販組合中央会 (景品) h. 全国卸売酒販組合中央会 (表示)
---	---

2. 자원유효이용법·용기포장 리사이클법(資源有効利用法・容器包装リサイクル法)

플라스틱 용기, 종이재질 용기, 페트병, 주류용 스틸캔, 주류용 알루미늄캔 등은, 분별회수촉진(분리수거)를 위해 재료식별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특정 사업자(수입업자를 포함)는 용기 폐기물의 재상품화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 관련 기관

국세청(国税庁)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 酒税行政関係情報(お酒に関する情報) ● 酒類における有機等の表示基準を定める件 ● 酒税	● 食品衛生法に基づく輸入手続きについて ● 食品添加物 ● 食品、添加物等の規格基準(告示第370号) ● 食品中の残留農薬等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소비자청(消費者庁)
● 資源有効利用促進法	● 食品表示について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해당 자료는 제품 분류 및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및 절차로서, 세부 품목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에 필요한 국가별, 제품별로 적용되는 강제 규제 또는 특정 인증에 대하여 해외정보자료를 무료로 조사하여 드립니다.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자료실에 첨부되어있는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파일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 드립니다.

※출처

- JETRO : 알류올飲料の輸入手続き : 日本
<https://www.jetro.go.jp/world/qa/04M-010572.html>
- 일본 국세청 : お酒に関するQ&A (よくある質問)【酒類の表示方法チェックシート】
<https://www.nta.go.jp/taxes/sake/qa/11/check.htm>
- 일본 국세청 : 食品表示法における酒類の表示のQ & A
<https://www.nta.go.jp/taxes/sake/hyoji/shokuhin/sakeqa/2904.pdf>
- KOTRA 해외시장뉴스 : 일본 증류주 시장동향(2024-07-25)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7&pagePerCnt=10&SITE_NO=3&MENU_ID=190&CONTENTS_NO=2&bbsGbn=254&bbsSn=254&pNttSn=217766&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EC%9D%BC%EB%B3%B8&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EC%9D%BC%EB%B3%B8
- KOTRA 해외시장뉴스 : 일본 맥주 시장동향(2023-03-21)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3&pagePerCnt=10&SITE_NO=3&MENU_ID=190&CONTENTS_NO=2&bbsGbn=254&bbsSn=254&pNttSn=200878&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EC%9D%BC%EB%B3%B8&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EC%9D%BC%EB%B3%B8
- KOTRA 해외시장뉴스 : 일본 진(Gin) 시장 동향(2025-12-08)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90&CONTENTS_NO=2&bbsGbn=254&bbsSn=254&pNttSn=236763&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EC%9D%BC%EB%B3%B8&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EC%9D%BC%EB%B3%B8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작성일자 : 2026.06.30.]

참고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만 검색이 가능하므로 위의 내용이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상세한 최신 현지 규제에 대해서는 일본 현지의 수입업체나 일본 내 KOTRA 등을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일본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아래의 현지 기관 등을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 KOTRA 도쿄 무역관 : <https://www.kotra.or.kr/tokyo/index.do>
TEL : (81-3) 3214-6951/FAX : (81-3) 3214-6950/kotratky@kotra.or.jp
- KOTRA 오사카 무역관 : <https://www.kotra.or.kr/osaka/index.do>
TEL : (81-6) 6262-3831/FAX : (81-6) 6262-4607/osaktc@kotra.or.jp
-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 <https://www.kotra.or.kr/fukuoka/index.do>
TEL : (092) 473-2005/6 /FAX : (092) 473-2007/fukuoka@kotra.or.jp
- KOTRA 나고야 무역관 : <https://www.kotra.or.kr/nagoya/index.do>
TEL : (81-52)561-3936/FAX : (81-52)561-3945/nagoya@kotra.or.jp
- KITA trade pro <https://www.kita.net/tradePro/tradeProMain/tradeProMain.do>

유의사항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정보센터에서는 대행기관(컨설팅회사)을 추천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전담대응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인증분야(CE, NMPA, FDA, CPNP,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유선 · 모바일 · 온라인 등을 통해 상시 문의사항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예정)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주요 인증 분야 (유럽 CE, CPNP, 중국 NMPA, 미국 FDA,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에 대한 문의 사항 상담 및 교육 지원
3. 상담절차 : 상담 채널 (유선/모바일/온라인) → 주요 인증 분야 문의 → 애로 해결 지원 (유선/1:1상담/게시판 답변)



4. 문의처
 - 유선 ARS 대표번호 : 1577-9911
 -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 :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
 - 온라인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전담대응반
(<https://www.smes.go.kr/globalcerti/user/exclusiveCharge/exclusiveChargeOnaList.do>)
5. 운영방법
 - 관리기관 내 대응 채널(유선-ARS, 모바일-카카오톡 채널, 온라인-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상시 애로 접수·상담 운영
 - 미 해결시 방문형 컨설팅과 연계하여 인증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지원
 -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인증획득 성공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인증 교육 실시

※ 주 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 기간은 귀사 제품에 적용되는 시험 항목, 시험 기관, 귀사의 관련 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